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7월 21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7월 13일, 고성미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7월 2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소통담당관”을 신설(안 제3조제2항제2호)
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기획재정국”을 “기획경제국”으로, “행정문화국”을 “행정안전국”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제2호)
-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도시안전국”을 “푸른미래도시국”으로, “경제환경국”을 “문화환경국”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-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“소통담당관”을 신설
(안 제3조제2항제2호)
 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“기획재정국”을 “기획경제국”으로, “행정문화국”을“행정안전국”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제2호)
 -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“도시안전국”을“푸른미래도시국”으로, “경제환경국”을“문화환경국”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제3호)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